금융위원회	보도자료	금융감독원
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3. 12. 27.(수)

‘24.1.12일 개정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됩니다.

- 자산보유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**보다 많은 기업**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**자금을 조달**할 수 있도록 지원

- 자금조달주체의 **위험보유 규제** 및 유동화전문회사등(유동화전문회사, 신탁회사)의 **정보공개 의무**를 도입하여 **유동화증권**의 **리스크 관리 강화**

12.27일(수), 금융위원회는 「**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**」 및 「**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**」을 개정안을 의결하였다.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「**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**」 및 **동법 시행령 개정***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. 개정 법률 및 하위법규는 ‘24.1.12일 시행될 예정이다.

* (법률) ‘23.7.11일 공포, (시행령) ‘23.12.12일 국무회의 통과

‘24.1.12일 시행 예정인 개정 자산유동화법, 시행령, 감독규정 및 회계처리기준의 **주요내용**은 다음과 같다

첫째, 일반기업의 **자금조달 기회**를 **확대**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요건을 완화하였다.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**등록 유동화제도**를 **활용**할 수 있으나, 높은 문턱(신용등급 BB등급 이상)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. 이에 자산보유자 **신용도 규제**를 **폐지**하는 대신, **외부감사**를 받는 법인 중 (ⅰ) **자산 500억원 이상**, (ⅱ) **자본잠식률 50% 미만**, (ⅲ) **감사의견 적정**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하였다. 이를 통해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약 3,000개사에서 **11,000개사 이상**으로 약 **3.8배**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.

또한,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·조합(신협·새마을금고중앙회, 농·수협 단위조합)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, **상호금융 全 권역**의 **중앙회·조합**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하였다.

* 상호금융업권 자산보유자 확대에 대해서는 12.19일 기시행

※ 관련 조문 : (법률) 제2조 (시행령) 제2조 (감독규정) 제2조

둘째, 기업 **부담**을 **완화**하고 등록유동화제도의 **활용도**를 **제고**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였다. **유동화 대상자산**을 **확대**하여 채권, 부동산, 기타의 재산권에서 **장래에 발생할 채권**과 **지식재산권**까지로 포함하였다. 자산유동화계획 **등록의무**를 **완화**하여 **유동화자산**을 **반환**하거나 유동화자산에 **담보권 설정**시 이를 **임의 등록**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. 법상 **인센티브**를 **확대**하여 **질권·저당권부 채권의 반환**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**담보신탁**한 경우에도 별도 **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**하도록 담보권(질권·저당권) 취득 특례*의 범위를 확대하였다.

* 자산보유자가 SPC에 질권·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(기초자산)을 양도하는 경우, 자산유동화법상 채권양도 등록시 별도 등기 없이 SPC가 질권·저당권 취득

< 주요 제도정비 내용 >

등록의무 완화

구분	개선내용
① 자산보유자 → SPC	현행 유지(의무등록)
② **SPC → 자산보유자**	의무등록→**임의등록**
③ **제3자에 담보권 설정**	의무등록→**임의등록**

② SPC가 유동화 완료 후 잔여자산을 당초 보유자에게 반환 : 투자자 보호에 영향 無

③ SPC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에 새로 담보권(질권·저당권) 설정 : 법률상 실익 無 (등록만으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별도로 등기 필요)

인센티브 확대

구분	개선내용
① 자산보유자 → SPC	현행특례 유지
② **SPC → 자산보유자**	**특례 신설**
③ **담보신탁**	**특례 신설**

③ SPC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을 제3자(예:신탁회사)에게 신탁

※ 관련 조문

유동화 대상자산 확대 : (법률) 제2조

등록의무 완화 : (법률) 제6조 (감독규정) 제9조

인센티브 확대 : (법률) 제8조

셋째, 유동화증권 시장의 **투명성** 제고를 위해 **등록·비등록 유동화증권**에 대한 **정보공개 의무**를 도입하였다.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증권 발행시 유동화증권의 **발행내역**, **유동화자산·자산보유자** 관련 정보, **업무위탁**에 관한 사항, 유동화증권의 **신용등급**, **신용보강**에 관한 사항 등을 **예탁결제원 홈페이지**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. 예탁결제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**증빙자료**도 제출하여야 한다. 정보공개 의무 위반시 1,000만원 이하의 **과태료**가 부과된다.

※ 관련 조문 : (법률) 제33조의2, 제42조 (시행령) 제5조의3 (감독규정) 제18조의2

넷째,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및 유동화증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조달주체의 **위험보유 의무**를 도입하였다.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**양도·신탁한 자** 및 계약 등을 통해 **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**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**제공한 자**는 유동화증권 **발행잔액의 5%**를 보유하여야 한다. 시장 자율성을 위해 **수평·수직·혼합**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동화증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. 위험보유 의무 위반시 **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5%**(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) 이하의 **과징금**이 부과된다.

다만, **신용위험** 또는 **이해상충 발생 가능성**이 **낮다**고 인정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위험보유 의무가 **면제**된다. **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**이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등 **신용보강**을 한 경우 위험보유 의무가 면제된다. 그 외에도 위험보유가 면제되는 **구체적인 유동화증권 유형***을 **열거**하였다.

* ① 기업 자금조달 지원목적의 P-CBO, ② 은행 정기예금 기초 유동화증권, ③ 금융회사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NPL 유동화증권, ④ 기업구매전용카드·당좌수표 기초 유동화증권 등

※ 관련 조문 : (법률) 제33조의3, 제38조의3 (시행령) 제5조의4 (감독규정) 제18조의3

다섯째, 명목상 회사(paper company)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**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**을 정비하였다. **일반사무**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**법인**이어야 하며, **자기자본 5억원** 이상, **상근인력 3인**(**전문인력 2인** 포함)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. 자금관리를 위탁받기 위해서는

자본시장법상 **신탁업 인가**를 받은 금융기관(부동산 신탁사 제외)이어야 한다. 다만, 자본시장법상 **전문투자자**가 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**유동화증권 전부**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**예외**를 허용하였다. 아울러, **자산관리자**를 **겸임**하는 경우 **이해상충 방지 체계**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였다.

금융위원회는 **금융감독원**, **예탁결제원**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**원활히 안착**될 수 있도록 **지원**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	책임자	과 장 김광일 (02-2100-2680)
		담당자	사무관 조윤수 (02-2100-2682)
	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	책임자	국 장 오상완 (02-3145-8100)
		담당자	팀 장 고병완 (02-3145-8090)
	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부	책임자	부 장 김종현 (051-519-1780)
		담당자	팀 장 안병욱 (051-519-178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 고 개정 자산유동화법 관련 FAQ

1.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하는 **등록 유동화증권** 외에 상법에 따라 발행하는 **비등록 유동화증권**도 **발행내역 공개** 및 **위험보유 의무** 적용 대상인지?

□ 개정 「자산유동화법」 **제33조의2**(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) 및 **제33조의3**(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)은 **"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"**가 발행하는 **"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"**에도 적용됩니다.

○ 따라서 **유동화전문회사등***이 발행하는 **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**(**비등록 유동화증권**)의 경우에도 유동화증권 **발행내역 공개** 및 **위험보유 의무**가 **적용**됩니다.

* 유동화전문회사,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

□ 한편, **위험보유 의무 주체**는 ❶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**양도** 또는 **신탁**한 자 및 ❷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**수익**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**실질적으로 제공**한 자입니다.

○ 아울러,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이 신용보강을 하는 등 **신용위험** 또는 **이해상충 발생 가능성**이 **낮은 경우**로서 법령에 **열거**되어 있는 유동화증권은 위험보유 의무가 면제됩니다.

○ 따라서, **등록·비등록 유동화증권** 모두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면제사유 등을 확인하여 **개별적으로 판단**하여야 합니다.

2. 유동화증권의 일부 조기상환 등으로 **발행잔액이 감소**하는 경우, 의무보유자의 **의무보유 금액**도 동일 비율만큼 **감소**하는지?

□ 개정「자산유동화법」제33조의3는 **유동화증권 발행금액**의 **100분의 5**에 해당하는 **금액의 범위**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의무보유 하도록 하고 있으며,

○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은 **유동화증권 발행잔액**의 **100분의 5**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□ 따라서, 의무보유자는 **유동화증권 발행잔액**의 **100분의 5**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면 되며,

○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일부 상환 등의 이유로 **발행잔액**이 **감소**하는 경우 **의무보유 금액**도 **비례**하여 **감소**합니다.

3. 만기일에 유동화증권이 **차환 발행**되는 경우, 자산보유자가 차환 발행된 **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%**를 **의무보유** 해야 하는지?

□ 동일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이 **차환 발행**되어 유동화증권의 **발행금액**(**잔액**)이 생기는 경우,

○ **자산보유자**는 **차환 발행**되는 **유동화증권 발행잔액**의 **5%**를 다시 **의무보유** 해야 합니다.

○ 이는 **차환 발행**되는 **유동화증권**도 최초에 **양도** 또는 **신탁**한 **유동화자산**을 통해 **발행**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

4. **위험보유 규제**는 **언제부터 적용**되는 것인지?
만약 **법 시행 이전**에 **발행**한 유동화증권이 **'24.1.12. 이후**에 **차환 발행**된다면 자산보유자에게 **위험보유 의무**가 적용되는지?

□ 원칙적으로 **위험보유 규제**는 **'24.1.12. 이후에 자산**을 **양도** 또는 **신탁**하거나 이에 준하여 **제공***하고 이를 기초로 **유동화증권**이 **발행**되는 경우부터 **적용**됩니다.

* 참가계약(수익이전계약) 등을 통해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

○ **등록 유동화증권**의 경우 **'24.1.12. 이후 최초로 자산유동화계획**을 금융감독원에 **등록**하는 경우부터 **적용**되며,

○ **비등록 유동화증권**의 경우 **'24.1.12. 이후 증권신고서**(자본법 §119)를 제출하거나, **증권**의 **모집**을 위한 **공시** 또는 **그 밖의 조치**(자본법 §130), **전자등록**(전자증권법 §25①) 신청, **예탁**(자본법 §309)한 경우 적용됩니다.

□ 한편, **법 시행 이전**에 **발행**한 유동화증권이 '24.1.12. 이후에 **차환 발행**되는 경우,

○ 법 시행일 이전에 자산의 양도·신탁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자산보유자에게 **위험보유 규제**가 **적용**되지 **않습니다.**

5. **자금관리자**(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관리·운용·차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)의 **자격요건**은?

□ 개정 「자산유동화법 시행령」 제5조의2에서는 **자금관리자**의 자격요건을 **자본시장법상 금전**을 **수탁**받는 **신탁업자**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한편, ❶자본시장법에 따른 **전문투자자**(집합투자기구 제외)가 ❷자산유동화법 시행령 **제5조의2제2호의 요건***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❸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**유동화증권 전부**를 보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자금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* ①법인에 해당, ②자기자본 5억원 이상, ③상시근무 인력 3명 이상(전문인력 2명 이상 포함), ④자산관리와 일반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

6.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위탁 관련,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**이해상충 방지체계**를 구축해야 하는 경우는?

□ 개정「자산유동화법 시행령」제5조의2에 따라 **같은 유동화전문회사**로부터 **유동화자산**의 **관리**(§10①)와 **일반 업무**(§23①)를 **위탁**받아 **함께 수행**하는 경우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**이해상충 방지체계**를 갖추어야 합니다.

○ 따라서, 다음 **세 가지** 경우 모두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**대상**에 **해당**합니다.

- (ⅰ) 유동화전문회사의 **자산관리자**와 **일반 업무수탁인**이 같은 경우
- (ⅱ) 유동화전문회사의 **자산관리자**와 **자금관리자**가 같은 경우
- (ⅲ) 유동화전문회사의 **자산관리자**, **일반 업무수탁인**, **자금관리자**가 모두 같은 경우

7.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 계획등록신청서 제출시 **업무수탁인**의 **자격요건**을 **증빙**하는 **서류**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?

□ **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** 구비 여부를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에 **기재**하도록 관련 **서식**이 **개정**('24.1.12. 시행)될 예정입니다.

○ 업무수탁인은 자산유동화계획 **등록 시점**에 **자격요건별 현황***을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

* (예) ① 자기자본 금액 : 10억원, ② 변호사 : 1명, 회계사 : 1명, 감정평가사 : 1명, 자산관리 또는 업무수탁 경력자 : 2년 이상 근무 2명, ③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

□ 금융감독원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등 관련 **자료의 제출**을 **요구**할 수 있습니다.

8. 유동화증권의 **정보공개 의무**는 **어떻게 이행**하는지?

□ 한국예탁결제원의 「**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**(e-SAFE*)」을 활용하여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공개하여야 합니다.

* http://e-safe.ksd.or.kr

○ 유동화증권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된 **업무매뉴얼** 등 **안내자료** 및 **증빙서류** 양식[1]은 **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**(e-SAFE) **공지사항** 및 **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**[2]에 **게시**할 예정(**'24.1.5.**)입니다.

* 1) 의무보유 면제대상 근거문서, 의무보유자 미존재 근거문서
2) http://www.ksd.or.kr

9. **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**(e-SAFE) **이용 신청**은 어떻게 하는지?

□ **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**(e-SAFE)을 신규로 이용하려는 경우, 다음 4가지 절차를 **순서대로 수행**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① (**참가기관 등록**) e-SAFE에 참가기관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**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**를 예탁원에 **우편제출**[1]하고, **이메일**로 이용 신청[2]

* 1)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37층 증권정보부 증권정보기획팀

2) portal@ksd.or.kr로 참가기관 명칭 및 e-SAFE 이용을 신청한다는 내용 송부 (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나,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면 보다 빠른 등록이 가능)

② (**e-SAFE 회원가입**)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에 접속해 **회원가입**

* http://e-safe.ksd.or.kr > 회원정보 관리 > 회원가입

③ (**업무권한 신청**) 증권정보서비스 업무권한 신청서 등 **제출서류**[1]를 예탁원에 우편제출[2]

* 1) 제출서류 : http://www.ksd.or.kr > 고객정보센터 > 양식/서식 > 업무참가 (①e-SAFE 사용자 증권정보서비스 업무권한 신청서 1부, ②증권정보서비스 업무권한 부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, ③법인인감증명서 원본(발행 후 3개월 미만) 1부)

2)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37층 증권정보부 증권정보기획팀

④ (**SAFE용 인증서 신청**) 예탁원 창구[1]에 **직접 방문**하여 SAFE용 인증서 신청서 등 **서류 제출**

* 1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5층 전자등록업무부 전자등록기획팀

2) 제출서류 : http://www.ksd.or.kr > 고객정보센터 > 양식/서식 > 업무참가 (①사업자용 인증서 신청서(e-SAFE 用) 1부, ②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,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④법인인감증명서 원본(발행 후 3개월 미만) 1부, ⑤인증서 발급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)